

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1. 발 의 자 : 최광옥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6월 2일
- 회부일자 : 2009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1997.4.11. 정신보건법 제2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오고 있으나, 정신보건법령이 12회에 걸쳐 개정 정비됨에 따라 관계법령만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,
-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15조 (운영세칙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2009.3.22. 동 조항 개정으로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함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정신질환 발생 예방과 치료, 사회복귀 유도 등 정신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
- 근거법령인 『정신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이 여러번 정비되어 관계법령만으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·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정할 수 있도록 『정신보건법 시행령』이 개정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임 :** 충청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. 1부.